

#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-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0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# 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과 ‘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규정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 도모

###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(안 제1조)
- 시장의 구역, 주요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(안 제2조~제4조)
- 임시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(안 제5조~제6조)
- 상인회의 등록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제9조)
- 시설물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### 제 정 조 례 안 : 붙임1

#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### 관계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5. 28. ~ 6. 18.(21일간)

###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3

< 붙임 1 >

#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구역)** 전통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구역은 안산시(이하 “시장(市長)”이라 한다)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.

**제3조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)** ① 시장(市長)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조직

2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

②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·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(市長)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,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·가스 및 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시장(市長)은 시장관리자의 청소와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**제4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** ①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차장 :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, 그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「건축법」, 「주차장법」 및 「안산시 주차장 조례」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2. 비가리개 :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(不燃材) 또는 난연재(難燃材)로 설치하여야 하며, 「건축법」, 「소방기본법」 및 「도로법」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.
3. 화장실 :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4. 시장안의 도로 :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, 「도로법」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및 「사도법」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.
5. 진입도로 :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도로로서 그 폭을 7미터 이상으로 하고,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「도로법」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및 「사도법」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(市長) 또는 상인조직·시장관리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임시시장의 관리)**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(市長)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유지 및 관리
2. 화재의 예방, 청소 및 방법 활동

3.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·불만의 처리
4. 상거래 질서의 확립
5.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(市長)이 인정하는 업무

**제6조(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)** 시장(市長)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.

**제7조(상인회의 등록 등)** ①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(市長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(市長)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시장 명칭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(市長)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설물의 소유권)** ① 정부, 경기도, 시(이하 “정부 등”이라 한다)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, 법 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,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,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
2.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. 다만,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(市長)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.

② 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합의에 따라 상인조직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상인조직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(市長)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설물의 이용료)** 시장(市長)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장(市長)과 수탁자가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**제10조(수익금의 사용)** ① 수탁자는 시장 관리의 위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유지·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, 지출 후 남은 수익금은 시장(市長)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인회, 시장관리자는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인정·등록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과		지역경제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과장 정 규 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팀장 박 용 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 승 욱 (행정 2843)

#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2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10. 25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# 수정이유

- 상인조직이 시장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변경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인 상권관리기구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“상인조직”을 “상인조직 등”으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.

### 주요골자

- 상인조직을 시장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.(안 제3조 및 제4조)
- “상인조직”을 “상인조직 등”으로 수정함.(안 제8조)
- “수탁자”를 “시장관리자”으로 수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 를 “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” 를 “시장관리자가” 로, “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” 을 “따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 ” 으로, “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” 를 “ 시장관리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(市長)은” 으로, “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” 를 “시장관리자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상인조직·시장관리자” 를 “시장관리자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(市長)에게 등록된 상인회는 상인회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시장 명칭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7항에 따른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상인조직과의” 를 “상인조직 등과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상인조직” 을 각각 “상인조직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상인조직” 을 각각 “상인조직 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 본문 중 “(市長)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” 를 “(市長)과 시장관리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수탁자가” 를 “시장관리자가” 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수탁자” 를 “시장관리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수탁자가” 를 “시장관리자가” 로 한다.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3조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) ① 시장(市長)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조직</p> <p>2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(市長)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,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3조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----- ----- &lt;삭 제&gt; &lt;삭 제&gt;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시장관리자가 ----- ----- 따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----- ----- 시장관리자가 ----- -----</p> <p>④ 시장(市長)은 ----- 시장관리자----- ----- -----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
원 안	수정안
<p>제4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(市長) 또는 <u>상인조직·시장관리자</u>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상인회의 등록 등) ① <u>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(市長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(市長)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시장 명칭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시장관리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7조(상인회의 등록 등) ① <u>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(市長)에게 등록된 상인회는 상인회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시장 명칭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7항에 따른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삭제)</p>
<p>제8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. 다만,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</p>	<p>제8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 원안과 같음</p> <p>1. (원안과 같음)-----</p> <p>2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원 안	수정안
<p>시장(市長)이 인정한 시설물은 <u>상인조직과의 협의</u>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.</p>	<p>-----<u>상인조직 등과의 협의</u>-----</p>
<p>② <u>상인조직</u>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합의에 따라 <u>상인조직</u>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<u>상인조직</u>의 소유로 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	<p>②<u>상인조직 등</u>----- ----- -----<u>상인조직 등</u>----- ----- -----<u>상인조직 등</u>----- -----</p>
<p>③ <u>상인조직</u>은 제2항에 따라 <u>상인조직</u>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(市長)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</p>	<p>③<u>상인조직 등</u>-----<u>상인조직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시설물의 이용료) 시장(市長)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장(市長)과 수탁자가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	<p>제9조(시설물의 이용료) ----(市長)과 시장관리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장관리자가</u>----- ----- -----</p>

원 안	수정안
<p>제10조(수익금의 사용) ① <u>수탁자</u>는 시장 관리의 위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유지·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, 지출 후 남은 수익금은 시장(市長)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수탁자</u>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익금의 사용) ① <u>시장관리자</u>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<u>시장관리자</u>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